#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건의원 · 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91 발의연월일: 2024. 9. 9.

발 의 자 : 김 건 · 홍기원 · 박충권

김미애 · 권영세 · 인요한

김승수 · 안철수 · 김기웅

유상현 · 정성국 의원

(11일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(안 제7조제3항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,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이북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"제7조제3항"을 "제7조제4항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보호신청 등) ① • ② (생	제7조(보호신청 등) ① · ②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
	해외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
	보호를 신청한 이북민에 대하
	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
	<u>을 할 수 있다.</u>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④</u> 국가정보원장은 <u>제3항</u> 에 따	<u>⑤</u> <u>제4항</u>
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	
기 위한 시설(이하 "임시보호	
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・운영	
하여야 한다.	<b>.</b>
⑤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	<u>⑥</u> 제4항
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제	<u>제</u>
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	<u>5</u> ষ্ট
치・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	
통령령으로 정한다.	<b>.</b>
제8조(보호 결정 등) ① 통일부장	제8조(보호 결정 등) ①
관은 <u>제7조제3항</u> 에 따른 통보	제7조제4항
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	
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. 다	

만,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	-
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	-
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	-
보호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	-
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	-
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	-
야 한다.	-

② (생 략)